

건설업 벌칙규정 안내

연재순서

1. 벌칙의 종류와 건설산업기본법령상의 벌칙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불이익처분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불이익처분
4.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상의 벌칙

건설산업 관련 법령수는 무려 80여개에 달하고, 행정처벌 또한 그 내용이 매우 복잡하다. 따라서 실무자들이 법령상의 벌칙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면 경영상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에 본지는 설비건설업 영위에 필요한 각종 위반 기준 및 처벌 내용을 중심으로 연재한다. [편집자주]

벌칙의 종류와 건설산업기본법령상의 벌칙

벌칙의 종류

<p>행정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미 :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관계법의 위반행위를 처벌함으로써 법규의 실효성 확보 * 종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형벌 : 징역·벌금 - 형사소송법에 의함 행정질서벌 : 행정법상의 의무 및 질서위반자에 대한 제재(금전벌의 일종). 행정기관이 부과징수하며 이익제기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절차에 의함 ※ 과태료는 면허수가 아닌 법인·자연인 기준으로 위반행위별 회수에 따라 부과
<p>행정제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말소 : 중대한 법규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건설산업기본법상) * 영업정지 : 도급계약의 체결은 물론 입찰·견적 등 도급계약의 부수적 행위를 포함한 영업활동을 일정기간 정지(건설산업기본법상) * 과징금 : 경제법상 의무위반자가 당해 위반행위로 경제적 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해 과하는 행정제재금 * 자격취소 * 자격정지 : 행정형벌과 행정제재는 동시에 처벌이 가능함
<p>처벌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역과 벌금은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확정·집행되고 과태료는 개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부과·징수함 * 등록말소·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는 시·도지사가 청문 등의 절차를 밟아 처분

건설산업기본법령상의 벌칙

1.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시행령 제80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행정처분은 위반행위별로 해당 업종에 한정하여 처분하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행정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 나. 영업정지처분과 과징금 부과처분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영업정지처분

- 가) 법 제81조제5호, 제7호 또는 제10호의 사유로 시정명령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 나) 법 제82조제1항제6호·제7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 다) 과징금을 부과한 규정을 다시 위반하거나 이미 부과된 과징금을 기간 내에 내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 라) 행정처분대상 건설업자가 과징금 부과를 원하지 않는 경우

2) 과징금 부과처분

- 위반행위가 위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 다음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이나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82조 및 제8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의 상한을 넘을 수 없으며, 감경하는 경우 영업정지 1개월 미만(과징금은 2천만원)으로 감경할 수 없고, 법 제38조의2를 위반한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1) 감경 사유

- 가) 법령해석상의 착오 등으로 위반행위를 한 후 시정을 완료한 경우로서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나)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는 제외한다)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 가중 사유

- 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타인(위반행위를 한 해당 건설업자와 그 소속 직원 및 근로자는 제외한다)을 사망하게 하거나 1억원 이상의 물적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나) 해당 위반행위가 제재처분대상 건설업자의 고의 또는 위반행위를 은폐·조작하기 위하여 발생한 경우

- 3) 감경 또는 가중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유마다 영업정지기간에서 1개월씩 감경 또는 가중(과징금의 경우 2천만원을 감경 또는 가중)한다.
 라.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 위

각 목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은 그 처분 사유를 발생시킨 자에게 적용하며, 처분 사유를 발생시킨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한다.

2. 개별기준

가. 법 제82조제1항 및 제8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위반행위별 영업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2차		3차 이상	
		영업정지 기간	과징금의 금액	영업정지 기간	과징금의 금액	영업정지 기간	과징금의 금액
1) 법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국가 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 준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2호	2개월	4,000만원	3개월	6,000만원	3개월	6,000만원
2)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3호	4개월	8,000만원	4개월	8,000만원	4개월	8,000만원
3) 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로서 제88조에 따른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발생한 하자가 1회 이상 포함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1호	4개월	8,000만원	4개월	8,000만원	4개월	8,000만원
4) 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82조 제1항제1호	3개월	6,000만원	3개월	6,000만원	3개월	6,000만원
5)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4호	3개월	6,000만원	2개월	8,000만원	4개월	8,000만원

6)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1조 (제2호·제3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1조제5호·제7호·제10호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나) 가) 외의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5호	2개월		3개월		3개월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7)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6호 가목	1개월		1개월		1개월	
8)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와 확인을 받지 않고 시공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6호 나목	1개월		1개월		1개월	
9)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전부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6호 다목	2개월		3개월		3개월	
10)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 및 제26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6호 다목·라목	1개월		1개월		1개월	
11)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전부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6호 라목	2개월		3개월		3개월	
12)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17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6호 마목	2개월		2개월		2개월	
1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 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업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가) 10명 이상 사망한 경우 나) 6명 이상 9명 이하 사망한 경우 다) 2명 이상 5명 이하 사망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7호	5개월 4개월 3개월		5개월 4개월 3개월		5개월 4개월 3개월	

14)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5호	1년		1년		1년
15)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키거나 일반 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5호	8개월		8개월		8개월
16)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해당 시설물의 구조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내용기간(耐用期間)을 현저히 단축시킨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5호	6개월		6개월		6개월
17) 고의나 과실로 시공관리를 소홀히 하여 인근의 주요 공공시설물 등을 파손하여 공중에 피해를 끼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5호	4개월		4개월		4개월
18) 고의나 과실로 설계상의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하거나 설계에서 정한 품질 이하의 불량자재를 사용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5호	2개월		2개월		2개월

나. 법 제8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영업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의 비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영업 정지 기간	과징금의 비율(%)			
			도급금액 5천만원 이하	도급금액 1억원	도급금액 5억원	도급금액 30억원 이상
1)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1호	8개월	30	24	16	8
2) 법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2호	6개월	24	18	12	6
3)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해당 업종의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하도급(재하도급을 포함한다)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3호	6개월	24	18	12	6

4)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1인에게 하도급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3호	8개월	30	24	16	8
5)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3호	6개월	24	18	12	6
6)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발주자의 승낙 없이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3호	4개월	16	12	8	4
7) 재하도급금지규정을 위반하였으나 해당 업종의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3호	4개월	16	12	8	4
8)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사금액의 하한에 미달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4호	6개월	24	18	12	6

비고

- 과징금의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에 각 구역 사이의 도급금액 등 해당 과징금의 비율은 직선보간(直線補間)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로 하고, 해당 과징금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과징금 중 1,000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 직선보간의 방법으로 산정된 각 구역 사이의 과징금이 해당 구역의 도급금액 중 최고 금액에 해당하는 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구역의 도급금액 중 최고 금액에 해당하는 과징금으로 한다.

다. 법 제8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영업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영업정지기간	과징금의 금액
1) 법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로서 그 가액(이하 "수수액"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나)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다) 수수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라) 수수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법 제82조의2제1항	8개월 6개월 4개월 2개월	8억원 6억원 4억원 2억원
2) 법 제82조의2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수수액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나)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다) 수수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라) 수수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법 제82조의2제2항	1년 4개월 1년 8개월 4개월	16억원 12억원 8억원 4억원

비고

1. 영업정지처분 및 과징금 부과처분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 가. 건설업자인 법인의 임원 또는 건설업자인 개인이 법 제82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 나. 건설업자인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건설업자인 법인의 임원 또는 건설업자인 개인으로부터 법 제82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시나 동의(묵인하거나 알고 있으면서 그대로 두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 다. 건설업자인 법인의 임원 또는 건설업자인 개인이 건설업자인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하는 법 제82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주의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2. 위 표 중 과징금 부과처분은 영업정지를 명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부과한다.

라. 법 제83조 중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의 위반행위별 영업정지기간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영업정지기간
1)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 제83조제3호	6개월
2) 건설업 등록을 한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법 제83조제9호	6개월
3)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법 제83조제10호	1년
4)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를 요구한 경우	법 제83조제11호	6개월

비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3조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 전까지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영업정지처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의 보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